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안 번호	18537
----------	-------

제안연월일 : 2026. 4.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 률안	제2210976호	한창민의원 등 13인	2025. 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4.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4.8.)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211050호	박정훈의원 등 10인	2025. 6.24.	
	제2214089호	박은정의원 등 12인	2025.11.11.	
	제2214313호	김용민의원 등 10인	2025.11.17.	
	제2214510호	이인영의원 등 10인	2025.11.24.	
	제2217441호	천준호의원 등 10인	2026. 3.12.	

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4.8.)는 위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4. 22.)는 법안

심사제1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한 대로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사금융업체의 불법 고리이자 수수, 스톡킹 등 불법행위가 수반된 채권추심행위를 비롯하여 불법사금융 범죄가 심각한 상황임.

불법사금융의 피해자 상당수는 서민, 사회취약계층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쉽지 않고, 불법사금융범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없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법정이자율 초과 수수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의 죄를 추가하여 불법사금융 근절 및 범죄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30호 신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

별표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죄피해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제3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p> <p>가.·나. (생략)</p> <p><u><신 설></u></p> <p>4.·5. (생략)</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 ----- -----.</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u>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u>」 제19조제2항제2호의 <u>죄</u></p> <p>4.·5. (현행과 같음)</p>